

한식진흥법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71
----------	-------

발의연월일 : 2018. 11. 28 .

발의자 : 박완주 · 노옹래 · 김병기

신창현 · 박정 · 서삼석

송갑석 · 이용득 · 백혜련

맹성규 · 윤후덕 · 김민기

설훈 · 김현권 · 김철민

임종성 · 제윤경 · 심재권

김한정 · 위성곤 의원

(20인)

제안이유

한식(韓食) 분야는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인 동시에 외식산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 각종 성과지표가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경쟁력 약화로 한식의 해외 확산과 산업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인구·사회 변화 등 시장의 움직임에 대응할 한식 전문인력과 시장 선도형 우수경영체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326개 식품분야 정 규교육기관 중 한식 전공학과는 7개소에 불과하고 한식 음식점업의 조직화 수준도 일식과 서양식에 비해 낮은 상황임.

이에 따라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한식, 한식산업, 한식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빨굴·복원과 계승·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 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한식 체험 활성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이미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 ·

운영 중인 한식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사. 보칙으로 청문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 · 위탁에 관한 사항, 별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한식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식”이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식재료 또는 그와 유사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식과 그 음식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원·활동 및 음식문화를 말한다.
2. “한식산업”이란 한식과 관련된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식사업자”란 한식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및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제 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발굴·복원과 계승·발전, 제도개선과 재원 확보,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

제5조(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한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 한식사업자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식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2. 한식의 복원·진흥·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연구
3. 한식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 한식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 그 밖에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에 필요 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고, 국민이 한식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한식의 국내외 확산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 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식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
2. 전시회·학술대회의 개최
3.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한식의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한식의 발굴·복원과 계승·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한식의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대학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

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2조(한식체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식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사업자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2. 한식사업자의 경영, 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15조(우수 한식당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한식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표시방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2.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한식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각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사업에 관하여 보고·지시·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우수 한식당의 지정 취소

제1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진흥원과 그 밖에 한식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 또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과태료) ① 제15조에 따라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식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식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구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이 법에 따른 진홍원이 포괄 승계하며, 구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홍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홍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홍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홍원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진홍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